

1. 개정이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신설의 적기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한편,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학교, 학급, 학생경비의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협의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를 “영 제5조의2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세입 확충>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교부수요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 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중등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정책분야 및 세부사업의 사업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국가시책에 따른 다음의 정책사업(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u>1)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u> <u>2) 국가책임 교육·돌봄 지원</u> <u>3)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u> <u>4) 교육복지 지원 사업</u> <u>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u> <u>6)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u> <u>7) 교육행정지원</u> <u>8) 그 밖에</u>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다. 교부방법 1) 교육부 실·국·과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2) 교육부장관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된 사업에 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도의 교육청이 그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행정·재정 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교부금(우수지자체지원수요)	가. 교부기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로 한다. 다. 교부방법 교육부장관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특별교부금을 결정·교부한다.
3. 법 제5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가. 교부기준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에 관한 소요예산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기업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른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시·군·구는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2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30% 이상의 대응투자 비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대응투자 비율
재정자립도 40% 이상	30% 이상
재정자립도 2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재정자립도 20% 미만	10% 이상

나. 교부대상

- 1)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수영장,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지원

- 2)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체육관 보수, 수영장 보수, 바닥 및 천장 교체,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외벽 보수, 내·외부 도장, 옥상 방수, 포장, 담장, 울벽 보수,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

- 3) 교육청·교육지원청 청사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연수원, 수련원, 정보원 및 과학교육원 등의 시설 신축·증축 및 개선 지원

- 4)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부방법

- 1) 시·도교육감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지역간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 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 대응투자가 확보(계획)된 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교부할 수 있다.

4. 법 제5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 수요)

가.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각종 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이하 ‘각종 재해 및 감염병’이라고 한다)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 1)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
- 2) 각종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피해 예방사업
- 3) 각종재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송, 임시수용 사업
- 4) 각종재해로 인한 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 교육 등의 사업
- 5) 각종 재해로 인한 학생·교직원 등의 심리·정서 등 피해 회복지원**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학생의 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7)** 중앙대책본부가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교부방법

시·도교육감이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 항목	측정 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 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전문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Sigma(\text{학교급별} \cdot \text{규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 <u>유치원: 학급당 8,784천원</u> · <u>초등학교: 학급당 8,352천원</u> · <u>중학교: 학급당 7,765천원</u>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u>일반고등학교: 학급당 7,787천원</u> · <u>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7,557천원</u>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9,030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8,702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이 정하는 적용률}$	· <u>유치원: 학생당 310천원</u> · <u>초등학교: 학생당 738천원</u> · <u>중학교: 학생당 766천원</u>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원 · <u>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17천원</u> · <u>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74천원</u>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당 585천원 · 특수학교: 학생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생당 1,94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905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71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sum \{ \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2의2에 따른다.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 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학교당 단위비용}) + (\text{학생 수} \times \text{학생당 단위비용}) + (\text{기준 교직원 수} \times \text{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비용: 9,406천원 · 학생당 단위비용: 73천원 · 기준 교직원당 단위비용: 566천원
	나. 지방선거 경비	지방선거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 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	$\{ (\text{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div \text{해당 시·도의 학교 수}) \div \sum (\text{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div \text{시·도별 학교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text{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	

		의 학생 수	학생 수 ÷ ∑(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u>수급자 수</u>,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u>특수교육대상 학생 수</u>	<u>학생 수 × 단위비용</u> ※단위비용산정방식 $\frac{\text{표준행정수요액의합}}{\text{전전년도기준측정단위수치의합}}$	<u>4,498천원</u>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 10%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용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건축 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 연면적	1) <u>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2) <u>(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 × 학교복합 시설 단위비용)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적용률</u> 3) <u>정산결과 남는 금액</u>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교실당 건축 비
다. 공립 통합 운영학교 신 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 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 연면적	1) <u>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2) <u>정산결과 남는 금액</u>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 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 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사립 유치원 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 개축·증설· 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 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 연면적	1) <u>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2) <u>정산결과 남는 금액</u>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건축비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증설 비	건축 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 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 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교실당 건축 비
아. 삭제 <2022. 11. 4.>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text{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 (\text{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text{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 (\text{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sum(\text{연령별 유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겨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times$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text{유치원 수} \times \text{단위비용}) + (\text{원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 11. 5.>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times$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times$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초등 돌봄 지원	학급 수	학급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실 수	교실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고교무상교육 지원	가. 입학금·수업료	학생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겨나 부족한 금액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수업료
	나. 학교운영지원비	학생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겨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겨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

9. 재정 결합 보전	가. 지방채 상환	원리금 환액	상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자사업 대료	민 임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 춤형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 교	영재학 교	대안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과정운영	중학교 과정운영	고등학교 과정운영
3학급	190,698	63,312	403,361	284,482	527,507	291,874	18,168	527,565	857,298	22,449	637,650	-	380,172	518,026	501,342
5학급	208,768	77,154	-	-	-	-		-	-		-	-	-	-	-
6학급	218,395	87,260	455,966	312,262	576,953	322,124		584,351	996,171		687,059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227,213	-	-	-	-	-		-	-		-	-	-	-	-
8학급	238,535	-	-	-	-	-		-	-		-	-	-	-	-
12학급	285,265	-	529,273	-	656,803	-		699,408	1,548,745		790,444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601,146	-	755,642	-		779,884	2,122,481		892,636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667,433	-	809,447	-		845,998	2,281,498		961,308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765,789	-	869,894	-		902,938	2,872,864		1,016,53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827,232	-	940,611	-		1,007,988	3,224,488		1,030,337	1,829,225	-	-	-
42학급	-	-	885,149	-	1,030,836	-		1,089,173	3,679,662		1,101,732	-	-	-	-
48학급	-	-	944,087	-	1,084,430	-		1,142,079	3,811,525		1,153,686	-	-	-	-
54학급	-	-	992,372	-	1,125,469	-		1,185,883	4,222,817		1,197,456	-	-	-	-
60학급	-	-	1,057,533	-	-	-		-	-		-	-	-	-	-

2.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삭제 <2021. 11. 16.>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따른 일반고 전환 후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단위비용	1,000,000천원	500,000천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 로 전환하려는 고 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3,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5,25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7,5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 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22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45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1,2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 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37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75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225,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65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5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2,250,000천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1) 운영비

학교 유형	학급수	단위비용	비고
가)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하는 학 과로서 교육감이 지정 한 학과를 설치·운영 하는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47,500천원	가)에 해당하 는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 하는 경우 학 급수는 산업분 야의 인재 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8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28,000천원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132,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168,000천원	

	(3) 27학급 이상	204,000천원	한 학과에 설치된 학급수로 산정한다
다)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1) 18학급 미만	66,000천원	
	(2)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84,000천원	
	(3) 27학급 이상	102,000천원	

2) 교육환경 구축비

학교 유형	단위비용	비고
가) 학과 내 학점제 운영 세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 지원한다
나) 학과 내 학점제 운영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다) 교내에 설치된 공동실습소에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개설한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수 × 125,000천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표준행정수요액”이란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지원 관련 세부사업의 과거 5개년도 합산액을 말한다.

※ 교육복지지원 관련 세부사업: 학력향상지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복지지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교육비지원, 급식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검정고시관리,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4의2.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이란 산정공식 1)의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과 중복되는 연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말한다.
6.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7.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9.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체노력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1. 세출 효율화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 · 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 · 운영하는 경우 (1) 초등학교 폐쇄: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폐쇄: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위비용	20,000천원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Σ 학교별 신설비·증설비 절감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3. 삭제 <2020. 2. 25.>			
4.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Σ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Σ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 전체 시·도 수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도 수	
5. 삭제 <2020. 10. 20.>			
6. 삭제 <2020. 10. 20.>			
7.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가	

		목에 따른 금액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 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나목에 따른 금액	
	상 반 기 예산 집행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비고

1. 측정항목 제1호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통합·운영"이란 학교 수가 줄어들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 1) 및 2)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각각 [(해당 회계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의 합산액 ÷ 해당 회계별 예산현액) × 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0.8 + 사고이월액 + 계속비 이월액×0.5]에 따라 산정한다. 단,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하반기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예산현액 규모	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5조 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조 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 원 이상 <u>20조원</u> <u>미만인</u> 시·도	100	-30	-60	-100
<u>4) 예산현액이 20조</u> <u>원 이상인 시·도</u>	<u>150</u>	<u>-45</u>	<u>-90</u>	<u>-150</u>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이월률·불용률”은 비교3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나.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예산현액 규모	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1조 원 미만인 시· 도	30	-8	-15	-30
2) 예산현액이 1조 원 이상 3조원 미만인 시·도	40	-12	-25	-40
3) 예산현액이 3조 원 이상인 시· 도	50	-15	-30	-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 측정항목 제7호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이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의 상반기 지출액을 그 예산과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반기 지출 목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 측정항목 제7호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이란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0.9 이상 1.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0.9 미만이거나 1.1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세입 확충

측정항목	산정공식
1. 자체수입 확충 (사용료,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1 -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div \text{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

비고

- 측정항목 제1호의 산정공식에서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이 0보다 클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생 략)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u>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u> 위한 산 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에 따라 자체노 <u>력의 정도를 반영하기</u> ----- ----- ----- ---

□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현행		개정안	
교부수요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교부수요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1.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나. 교부대상 국가시책에 따른 다음의 정책사업(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u>공교육 혁신 사업</u> 2) <u>교육복지 지원 사업</u> 3) <u>안전한 학교 지원 사업</u> 4) <u>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u> 5) <u>교육행정 지원 사업</u> 6) (생략)	1.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나. 교부대상 국가시책에 따른 다음의 정책사업(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u>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u> 2) <u>국가책임 교육·돌봄 지원</u> 3) <u>디지털 교육혁신 지원</u> 4) <u>교육복지 지원 사업</u> 5) <u>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u> 6) <u>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u> 7) <u>교육행정지원</u> 8) (현행과 같음)
3.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가. 교부기준 1) (생략) 2)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기업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나. 교부대상 1)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u>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지원</u> 2)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u>바닥 및 천정 교체, 창문 및 출입문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조명시설 개선, 외벽보수, 급식실 개선, 화장실 개선, 옥상 방수, 용벽 보수 및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u> 3) ~ 5) (생략)	3.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	가. 교부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기업체 등의 외부재원 대응투자(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수영장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u> 나. 교부대상 1)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u>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수영장,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지원</u> 2)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u>체육관 보수, 수영장 보수, 바닥 및 천장 교체,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외벽보수, 내·외부 도장, 옥상 방수, 포장, 담장, 용벽 보수,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u> 3) ~ 5) (현행과 같음)

4. 법 제5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u>태풍·홍수·폭설·지진·가뭄 또는 감염병 등 각종 재해(이하 “각종재해”라 한다)</u>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교부대상 1) ~ 4) (생략) <u><신 설></u>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학생의 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6) 중앙대책본부가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법 제5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재해대책사업수요)	가. 교부기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각종 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이하 ‘각종 재해 및 감염병’이라고 한다)</u> ----- ----- -----. 나. 교부대상 1)~4) (현행과 같음) <u>5) 각종 재해로 인한 학생·교직원 등의 심리·정서 등 피해 회복지원</u> <u>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학생의 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u> <u>7) 중앙대책본부가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u> <u>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각종재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	---	--	--

□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2. 학교 운영비	나. 학급 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7,466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학급당 6,600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6,619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6,423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3,959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9,030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8,702천원	2. 학교 운영비	나. 학급 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8,784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8,352천원 · 중학교: 학급당 7,765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7,787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7,557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6,423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7,099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9,030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급당 8,702천원	
2. 학교 운영비	다. 학생 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264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627천원 · 중학교: 학생당 651천원 · 방송통신중	2. 학교 운영비	다. 학생 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310천원 · 초등학교: 학생당 738천원 · 중학교: 학생당 766천원 · 방송통신중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 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 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66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학생당 799천원 · 방송통신고 등학교: 학 생당 585 천원 · 특수학교: 학 생 당 1,177천원 · 영재학교: 학 생 당 1,94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 생 당 905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 생 당 1,171천원				학교: 학생당 687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17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학생 당 774천원 · 방송통신고 등학교: 학 생당 585 천원 · 특수학교: 학 생 당 1,384천원 · 영재학교: 학 생 당 1,942천원 · 대안학교 - 초등학교 과정 운영: 학 생 당 905천원 - 중학교 과정 운영 학생당 1,192천원 - 고등학교 과정 운영: 학 생 당 1,171천원	
4. 교육 복지지 원비	나. 계 층 간 균형교 육비	학생 수, 수 급 자 수, 한 부 모 가족 보 호 대 상 학생 수, 차 상 위 계층 학 생 수, 다 문 화 가정 및 북한 이 탈 주 민 가정 학 생 수	시·도별 학생 수 대비 배려계층 학 생 수 비중(50%) + 전체 배려계층 학생 수 대비 시도 별 배려계층 학생 수 비중(50%)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7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교 육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 다) 수, 한부모 가 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 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 주민 가정 학생 수 ÷ 해당 시·도의 전체 학생 수) ÷ Σ(시·도별 수급	<신설>	4. 교육 복지지 원비	나. 계 층 간 균형교 육비	수 급 자 수, 한 부 모 가족 보 호 대 상 학 생 수, 차 상 위 계층 학 생 수, 다 문 화 가정 및 북한 이 탈 주 민 가정 학 생 수, 특 수 교 육 대 상 학생 수	학생 수 × 단위비 용 ※ 단위비용 산정방 식: 표준행정수요액의합 전전년도기준측정단위수치의합	4,498천원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시·도별 전체 학생 수)} × 50% + (해당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전체 시·도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5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건축 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생략) 3) (생략)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단위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	건축 연면적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단위비용	
	나. 공립학교 신설·전설(轉移)·증설비	토지면적	(생략)	(생략)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나. 공립학교 신설·전설(轉移)·증설비	토지면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건축 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 × 학교복합시설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3)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²당 건축비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다. 공통 립합운영 학교설·이 전비	증설교실 수	(생략)	(생략)		다. 공통 립합운영 학교설·이 전비	증설교실 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지면적	(생략)	(생략)			토지면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u>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건축 연면적	<u>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u>2) 정산결과 남은 금액</u>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마. 학교 통합에 따른 신설·이 전·개 축·증 설·대 수선 비	토지면적	(생략)	(생략)		마. 학교 통합에 따른 신설·이 전·개 축·증 설·대 수선 비	토지면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연면적	<u>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건축 연면적	<u>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u>2) 정산결과 남은 금액</u>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 별표 2 비고

현행

개정안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1.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습수의 단위비용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 형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 형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대안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과정운영	중학교 과정운영	고등학교 과정운영							초등학교 과정운영	중학교 과정운영	고등학교 과정운영			
3학급	162,093	53,816	342,859	241,810	448,381	248,093	18,168	448,430	728,703	22,449	542,002	-	380,172	518,026	501,342	18,168	527,565	857,298	22,449	637,650	-	380,172	518,026	501,342			
5학급	177,453	65,583	-	-	-	-		-	-		-	-	-	-	-		-	-		-	-	-	-	-	-	-	-
6학급	185,636	74,171	387,573	265,423	490,410	273,805		496,698	846,745		584,000	611,028	411,875	552,012	540,843		584,351	996,171		687,059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193,131	-	-	-	-	-		-	-		-	-	-	-	-		-	-		-	-	-	-	-	-	-	-
8학급	202,755	-	-	-	-	-		-	-		-	-	-	-	-		-	-		-	-	-	-	-	-	-	-
12학급	-	-	449,883	-	558,283	-		594,497	1,316,433		671,877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699,408	1,548,745		790,444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510,976	-	642,296	-		662,901	1,804,109		758,741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779,884	2,122,481		892,636	1,358,96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567,322	-	688,090	-		719,098	1,939,273		817,111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845,998	2,281,498		961,308	1,555,06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650,924	-	739,410	-		767,497	2,441,934		864,050	-	650,924	741,680	767,497		902,938	2,872,864		1,016,53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703,149	-	799,520	-		856,790	2,740,815		901,286	1,829,225	-	-	-		1,007,988	3,224,488		1,060,337	1,829,225	-	-	-	-	-	
42학급	-	-	752,377	-	876,211	-		925,797	3,127,713		936,472	-	-	-	-		1,089,173	3,679,662		1,101,732	-	-	-	-	-	-	
48학급	-	-	802,478	-	921,766	-		970,767	3,239,796		980,633	-	-	-	-	1,142,079	3,811,525	1,153,696	-	-	-	-	-	-			
54학급	-	-	843,517	-	956,649	-	1,008,000	3,589,394	1,017,838	-	-	-	-	1,185,883	4,222,817	1,197,456	-	-	-	-	-	-					
60학급	-	-	898,950	-	-	-	-	-	-	-	-	-	-	-	-	-	-	-	-	-	-	-	-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 · 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 · 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현행			개정안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2,000,000천원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3,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3,5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5,25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5,00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7,5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15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22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30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0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45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80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1,2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25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37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50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150,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75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225,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11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0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65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5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1,50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2,250,000천원
바. ~ 자. (생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신설>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표준행정수요액”이란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지원 관련 세부사업의 과거 5개년도 합산액을 말한다. ※ 교육복지지원 관련 세부사업: 학력향상지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복지지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교육비지원, 급식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검정고시관리,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4의2.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5.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이란 산정 공식 1)의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과 중복되는 연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 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6.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 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현 행	개정안
6.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u>산정한다.</u> (후단 신설) 7.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u>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한다.</u> 8.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9.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별표 3 <자체노력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현행	개정안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자체노력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표 생략)	1. 세출 효율화 (현행과 같음)																																																							
비고 1.~2. (생략) 3.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 란 1) 및 2)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각각 [(해당 회계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의 합산액 ÷ 해당 회계별 예산현액)×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전전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을 산정할 때에는 전 전년도 10월 1일 이후 교부되어 이월된 국고보조 금 및 특별교부금 예산을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 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 란 1) 및 2)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각각 [(해당 회계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의 합산액 ÷ 해당 회계별 예산현액)×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에서 이월액은 [명 시이월액×0.8 + 사고이월액 + 계속비 이월액× 0.5]에 따라 산정한다. 단,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하반기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7호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 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단위: 억원)																																																							
<table><tr><th>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th><th>0 퍼센 트 포인트 이하</th><th>0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1 퍼센 트 포인트 이하</th><th>1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2 퍼센 트 포인트 이하</th><th>2 퍼센 트 포인트 초과</th></tr><tr><th>예산현액 규모</th><th></th><th></th><th></th><th></th></tr><tr><td>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td><td>50</td><td>-15</td><td>-30</td><td>-50</td></tr><tr><td>2) 예산현액이 5 조원 이상 10 조원 미만인 시·도</td><td>75</td><td>-25</td><td>-50</td><td>-75</td></tr><tr><td>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인 시·도</td><td>100</td><td>-30</td><td>-60</td><td>-100</td></tr></table>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0 퍼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1 퍼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2 퍼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센 트 포인트 초과	예산현액 규모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 조원 이상 10 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인 시·도	100	-30	-60	-100	<table><tr><th>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th><th>0 퍼센 트 포인트 이하</th><th>0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1 퍼센 트 포인트 이하</th><th>1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2 퍼센 트 포인트 이하</th><th>2 퍼센 트 포인트 초과</th></tr><tr><th>예산현액 규모</th><th></th><th></th><th></th><th></th></tr><tr><td>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td><td>50</td><td>-15</td><td>-30</td><td>-50</td></tr><tr><td>2) 예산현액이 5 조원 이상 10 조원 미만인 시·도</td><td>75</td><td>-25</td><td>-50</td><td>-75</td></tr><tr><td>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 인 시·도</td><td>100</td><td>-30</td><td>-60</td><td>-100</td></tr><tr><td>4) 예산현액이 20조원 이 상인 시·도</td><td>150</td><td>-45</td><td>-90</td><td>-150</td></tr></table>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0 퍼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1 퍼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2 퍼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센 트 포인트 초과	예산현액 규모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 조원 이상 10 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 인 시·도	100	-30	-60	-100	4) 예산현액이 20조원 이 상인 시·도	150	-45	-90	-150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0 퍼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1 퍼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2 퍼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센 트 포인트 초과																																																				
예산현액 규모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 조원 이상 10 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인 시·도	100	-30	-60	-100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0 퍼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1 퍼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센 트 포인트 초 과 2 퍼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센 트 포인트 초과																																																				
예산현액 규모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 조원 이상 10 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 인 시·도	100	-30	-60	-100																																																				
4) 예산현액이 20조원 이 상인 시·도	150	-45	-90	-1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 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후단 신설)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 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이월률·불용률”은 비교3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현 행	개정안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세입 확충 <table border="1"> <thead> <tr> <th>측정항목</th><th>산정공식</th></tr> </thead> <tbody> <tr> <td>1. 자체수입 확충 (사용료,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 산매각대, 이자수 입)</td><td> $(1 -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div \text{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 </td></tr> </tbody> </table>	측정항목	산정공식	1. 자체수입 확충 (사용료,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 산매각대, 이자수 입)	$(1 -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div \text{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
측정항목	산정공식				
1. 자체수입 확충 (사용료,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 산매각대, 이자수 입)	$(1 -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div \text{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중치}$				
<신 설>	비교 1. 측정항목 제1호의 산정공식에서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평균 세입결산액]” 이 0보다 클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